■ 민족문화연구 제92호(2021.8.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275-304.
http://doi.org/10.17948/kcs.2021..92.275

인조대 功臣會盟祭의 시행과 참여자 論賞*
—공신 자손 우대책을 중심으로—

고민정(高旻廷)**

목 차

1. 서론
2. 인조대까지 시행된 공신회맹제
3. 공신회맹제의 참여 인원과 공신 자손
4. 공신회맹제의 참여자 논상과 공신 자손
5.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국가가 공신 자손을 대상으로 시행한 우대 정책의 실상을 고찰하기 위해서 인조대를 중심으로 전후의 공신회맹제가 시행되는 과정, 회맹제의 참여 인원, 회맹제 이후의 참여자 상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조선시대의 회맹제는 국초부터 시행되었으나 성종대부터 신공신이 녹훈될 때 신·구공신이 모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인조대에는 정사·진무공신, 소무·영사공신, 영국공신의 회맹제가 시행되었다. 참여 인원은 대략 300여 명인데, 공신 본인을 비롯한 아들·손자가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회맹제에 공신의 적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5B5A02029084).
** 강원대 인문학부 사학전공 강사.

장자와 친자가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사공신 회맹제 때부터이고 적장손이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팔공신 회맹제 때부터인데, 구공신들이 사망하게 되면서 자손들의 참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회맹제 후에는 국왕의 특별한 명령으로 참여자들에게 물품 및 가자를 행하는 관례가 존재하였다. 인조도 이와 같은 전례에 따라 공신의 적장 자손 중에서 관직이 없는 자와 자궁·준직자에게는 가자를 내렸고, 70세 이상이면서 실직 4품 이상을 역임하거나 80세 이상인 자에게는 노직을 주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물품을 하사하였다. 다만 두 번째 회맹제에서는 상격이 중복된다는 대간의 비판에 따라 일부 조정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공신의 자손들은 일찍부터 회맹제에 참여할 권한을 획득하였고 특히 적장자손들은 더욱 특별한 우대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공신 자손을 우대하기 위해 설치된 공식적 제도 외에, 비정기적으로 행해진 국가 전례에서도 공신의 자손들을 꾸준히 우대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주제어: 공신 자손, 공신회맹제, 공신회맹록, 加資, 특권의 세습.

1. 서론

조선의 공신제도는 건국 초부터 시행되었다. 태조가 건국에 공적을 세운 신하들을 공신이라 칭하고 공적의 크기에 따라 차등적 포상 및 특전을 내려준 것을 시작으로, 국가를 위해 특별한 공적을 세운 자들을 우대하는 제도가 만들어져 운영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시대에는 개국공신부터 분무공신까지 총 28번의 녹훈이 이루어졌으며, 대략 1천 명의 정훈공신이 생겨나게 되었다.

국가는 공신을 특별히 우대하며 다양한 포상과 특전을 내려주었다. 공신으로 녹훈되었을 때는 공적의 크기에 따라 정해진 등급에 맞춰 官階를 올려주었고 토지·노비·은자·내구마 등을 내려주었으며, 초상화를 그려주고 사면의 특전을 부여하였다.[1] 또한 공신이 관직에 종사할 때는 범죄를 저질러도 쉽게 파직되지 않았고 褒貶에서 낮은 성적을 받아도 다른 관료들에 비해 빨리 敍用될 수 있었다. 더욱이 공신이 사망했을 때는 일정 기간 朝會를 정지

1) 고민정, 「조선 후기 공신의 녹훈과 특권에 관한 연구」, 『역사문화연구』 75, 한국외국어대 역사문화연구소, 2020b, 7-8면.

하여 애도하였고 禮葬・追贈・贈諡의 특전을 내려주었다.[2)]

그리고 공신 자손을 우대하는 정책도 시행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忠義衛의 운영이다. 충의위는 특수 병종의 하나로 불충・불효죄를 저지르지 않은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공신 자손이라면 시험 없이 입속할 수 있었다. 여기에 입속하면 군사일 가운데에서도 비교적 가벼운 일에 속하는 국왕의 호종과 도성의 시위를 맡게 되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去官할 수 있었기 때문에 入仕의 통로로도 활용되었다.[3)]

즉 충의위는 국초부터 공신 자손을 우대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로서 확립되었고 시기에 따라 입속의 범위가 조절되기는 했으나 조선 말기까지 그 기능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국가가 공신 자손을 우대하는 방식은 여기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비정기적으로 행해진 국가행사에 공신 자손들이 참여하게 되면 특별한 포상을 내려주기도 했는데, 공신회맹제가 바로 그러한 예에 속한다. 공신회맹제란 국왕 또는 세자와 공신들이 모여 삽혈 의식을 행하며 천지신명에게 국가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의식인데, 여기에는 공신 자손들도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조선후기 공신에 관한 연구는 녹훈의 배경이 되었던 정치・외교적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과 결과를 고찰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부상하게 된 공신들의 정치・사회적 성격 및 영향력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즉, 정사공신을 대상으로 반정 세력의 결집 과정, 공신 간의 연관관계를 고찰하거나[4)] 진무공신을 대상으로 녹훈 과정, 출신 성분을 분석하고 그 이후의 군사 활동에 대하여 고찰하였으며[5)] 보사공신을 대상으로 녹훈 과정과 공신의 사회적 관계망을 고찰하기도 하였다.[6)] 또한 분무공신을 대상으로 녹훈 이후 신분 상승의 범위를 가늠하고,[7)] 공신 녹훈으로 인한 중앙정국의

2) 정긍식, 「朝鮮前期 功臣地位의 承繼」, 『서울대학교 法學』 43-2, 서울대 법학연구소, 2002, 264-266면.
3) 이준구, 『朝鮮後期 身分職役變動硏究』, 일조각, 1992, 166-167면.
4) 이기순, 「「仁祖反正」 功臣勢力의 性格」, 『백산학보』 38, 백산학회, 1991.
5) 박기훈, 「인조대 진무공신의 정치적 위상과 군사 활동」,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20.
6) 이상식, 「숙종대 保社功臣의 錄勳 과정과 사회적 關係網 분석」, 『한국사연구』 155, 한국사연구회, 2011.

변화가 지역사회에 끼친 영향을 고찰하는 연구가 있었다.[8]

이처럼 정치세력의 하나로서 공신의 성격을 규명하면서 많은 성과를 축적하였으나 공신이 됨으로써 누릴 수 있는 특권에 관해서는 최근에야 연구가 시작되었다. 즉 공신으로 녹훈하면서 얻게 된 특권과 그것이 확대되는 과정이 고찰되기도 했으나[9] 아직도 해명해야 할 문제가 많다. 더욱이 공신의 자손들이 그들의 자손이라는 이유만으로 획득하게 되는 특권에 대해서도 충의위의 입속에 관한 개괄적 사실들만 밝혀졌을 뿐 구체적인 실상을 확인하는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였다. 그러나 공신 자손들은 대대로 세습적 지위를 획득하면서 국가로부터 다양한 특권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공신 자손이 얻게 된 특권을 고찰하는 것은 공신제도의 운용방식은 물론이고 조선사회의 신분제적 측면을 이해하는 데도 보탬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인조대를 중심으로 공신회맹제의 시행을 살펴보고 이에 참여한 이들을 분석한 다음, 이어지는 論賞에서 국가가 공신 자손을 우대하기 위해 취했던 정책의 일면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 어느 때보다 인조대를 주목한 이유는 인조의 등장과 함께 이루어진 급격한 정치세력의 교체로, 불안해진 정국을 다스리기 위해 공신 녹훈이 빈번하였고 이로 인해 회맹제도 여러 차례 거행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시기는 전후의 전란으로 인해 공신에 관한 기록들이 대부분 소실된 탓에, 남은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고증하여 전례를 다시 세우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에 당시의 논의를 따라가며 분석한다면 전후 시기를 비교하며 공신 자손에게 주어진 특권의 실상을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2. 인조대까지 시행된 공신회맹제

조선에서의 공신회맹제는 개국공신을 녹훈한 후, 세자를 비롯한 왕자와 공

7) 김학수, 「18세기 한 鄕班 출신 공신의 정치・사회적 존재 양상」, 『조선시대사학보』 77, 조선시대사학회, 2016.
8) 고수연, 「鎭川地域士族의 分岐양상과 무신난」, 『역사와 실학』 68, 역사실학회, 2019.
9) 고민정, 앞의 글, 2020b.

신들이 왕륜동에 모여 천지신명께 국가에 대한 충성을 맹세한 것이 그 시초이다.[10] 이때는 회맹문의 주체가 元勳 裵克廉을 위시한 공신이었으므로, 공신을 주축으로 한 의례가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뒤이어진 定社功臣과 佐命功臣 회맹제에는 국왕이 직접 참여하였고 회맹문도 국왕의 관점에서 작성되는 특징을 보인다.[11] 또한 그 이후에 행해진 회맹제에는 국왕 또는 세자가 반드시 참여하고 회맹문도 대체로 국왕의 입장에서 작성되었으므로, 회맹제가 국가의 주요한 전례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초기의 회맹제는 새로운 공신이 녹훈되었을 때 개최되었던 것과 공신 전체가 모여 개최되었던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국공신부터 좌명공신이 녹훈될 때까지 개최되었던 회맹제의 형태를 살펴보면 처음부터 舊功臣 없이 新功臣만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12] 그러다가 좌명공신 회맹제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모든 공신이 한자리에 모이는 회맹제가 마련되었다.[13]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얼마간 지속되어 신공신을 위한 회맹제가 개최된 후 다시 전체 공신을 위한 회맹제가 개최되었다. 즉 단종대 靖難功臣 회맹제가 있은 후 다시 四功臣 회맹제가 개최되었으며,[14] 세조대 佐翼功臣 회맹제가 있은 후 다시 五功臣 회맹제가 개최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15]

그러나 성종대에는 새로 녹훈된 佐命功臣을 위한 회맹제를 거행하면서, 그 이전의 공신들까지 모두 참여하게 하였다.[16] 이것은 회맹제의 횟수를 줄이고 참여 대상을 늘리면서 한 번의 회맹제로 신공신을 위한 회맹제 거행이라는 명분과 신공신과 구공신 간의 결속 도모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누릴

10)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1392) 9월 28일 병오.
11) 『태조실록』 15권, 태조 7년(1398) 10월 9일 신해;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1401) 2월 12일 신축.
12) 『태조실록』 15권, 태조 7년(1398) 10월 9일 신해;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1401) 2월 12일 신축;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1401) 2월 12일 신축.
13)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1404) 11월 16일 갑인.
14) 『단종실록』 9권, 단종 1년(1453) 11월 20일 임신; 『단종실록』 10권, 단종 2년(1454) 2월 13일 갑오.
15)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1455) 10월 22일 갑자;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1455) 10월 23일 을축;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1461) 2월 6일 정축.
16) 『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1471) 4월 6일 무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전형이 되어 신공신이 녹훈될 때마다 회맹제를 개최하는 관례가 굳어지게 되었으며 구공신도 동시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다만 조선시대를 통틀어 신공신이 녹훈된 후에 회맹제가 거행되지 못한 사례는, 翊戴功臣이 유일하다. 익대공신은 南怡의 獄事로 공적을 세운 자들로 예종의 즉위 초반, 세조의 국상 기간에 녹훈되었다.[17] 이때는 예종이 종묘사직에도 親祀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국왕의 주관 아래 회맹제를 거행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웠다. 이에 국왕의 참석 없이 공신만으로 회맹제를 여는 것은 옳지 못하므로 국상 기간이 지난 뒤에 회맹제를 여는 것이 옳다는 대신들의 의견에 따라 일정을 늦추고[18] 공신교서만 먼저 내려주었다.[19] 그런데 이로부터 6개월 후에 예종이 사망하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서[20] 익대공신 및 七公臣 회맹제는 끝내 개최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익대공신은 성종대 좌리공신이 녹훈된 이후에야 구공신의 자격으로 회맹제에 참여할 수 있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부득이한 상황으로 회맹제가 열리지 못한 익대공신을 제외하면, 공신이 녹훈된 후 회맹제를 개최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러나 서로 다른 공적을 가진 공신들이 동시에 녹훈될 경우에는, 각각을 구분하여 회맹제를 개최하거나 한 번에 모아 개최하는 등 당시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었다. 선조대의 光國功臣과 平難功臣은 각각 종계변무의 공적과 鄭汝立의 난을 평정한 공적을 인정받아 같은 날짜에 동시에 녹훈되었다.[21] 그러나 광국공신의 회맹제는 8월 16일에 있었고 평난공신의 회맹제는 8월 25일에 있었으므로[22] 동일한 날짜에 녹훈되었더라도 회맹제는 서로 다른 날짜에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두 회맹제 사이에 나타난 7

17) 『예종실록』 1권, 예종 즉위년(1468) 10월 28일 갑인.
18) 『예종실록』 5권, 예종 1년(1469) 5월 13일 병신.
19) 『예종실록』 5권, 예종 1년(1469) 5월 20일 계묘.
20) 『예종실록』 8권, 예종 1년(1469) 11월 28일 무신.
21) 『선조수정실록』 24권, 선조 23년(1590) 2월 1일 계유; 『선조수정실록』 24권, 선조 23년(1590) 8월 1일 경오.
22) 『광해군일기』 55권, 광해 4년(1612) 7월 6일 무술.

일의 간격은 회맹제를 행하기 전에 4일간 散齋하고 3일간 致齋해야 한다는 의례 절차를 따랐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23] 사실상 연이어 두 번의 회맹제를 개최했던 것이다.

그러나 선조를 호종한 공적으로 녹훈된 扈聖功臣, 전공을 세워 녹훈된 宣武功臣, 李夢鶴의 난을 토벌한 공적으로 녹훈된 淸難功臣은 임진왜란이 끝난 후에 동시에 녹훈되었고[24] 회맹제도 역시 동시에 거행되었다. 이들 세 공신의 녹훈과 회맹제가 동시에 거행된 이유는 이들의 공적이 모두 임진왜란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전후의 복구가 미처 행해지기 전이라 회맹제를 별도로 시행할 만큼 국가재정이 충분치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시기의 신공신에게 내려진 경제적 포상을 살펴보면 그전과 달리 현저히 적은 몫이 배분되었을 뿐 아니라, 「공신교서」로 약속한 사패 재산을 받는 데까지도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백여 년이 소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25]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다음 왕대인 광해군대까지 이어져, 비슷한 시기에 녹훈된 衛聖功臣, 翼社功臣, 定運功臣, 亨難功臣의 회맹제도 같은 날짜에 행해졌다.[26]

인조대에는 반정으로 인한 정권 획득과 네 차례의 역모를 진압하는 데 공적을 세운 이들을 우대하기 위하여 총 다섯 차례의 공신 녹훈이 있었으며 세 차례의 회맹제가 있었다. 공신의 녹훈 횟수에 비해 회맹제의 개최 횟수가 적게 나타나는 것은 비슷한 시기에 녹훈된 靖社功臣과 振武功臣, 昭武功臣과 寧社功臣의 회맹제가 합쳐서 개최되고 寧國功臣의 회맹제만 별도로 개최되었기 때문이다.

다음 〈표 1〉은 인조대의 공신 녹훈과 회맹제의 거행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27]

---

23) 『단종실록』 9권, 단종 1년(1453) 11월 20일 임신.
24) 『선조실록』 175권, 선조 37년(1604) 6월 25일 갑진.
25) 고민정, 앞의 글, 2020b, 7-15면.
26) 『광해군일기』 64권, 광해 5년(1613) 3월 12일 경오.
27) 〈표 1〉은 『인조실록』과 『승정원일기』의 기사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녹훈 날짜는 공신의 녹훈을 명한 최초의 날짜이며 공신 수는 최종적으로 녹훈된 인원을 가리킨다.

〈표 1〉 인조대의 공신 녹훈과 회맹제 거행

번호	명칭	사유	공신 수	녹훈 날짜	회맹제 날짜
1	靖社	인조반정	53명	1623. 윤10. 18	1625. 4. 17
2	振武	이괄의 난	32명	1624. 3. 8	
3	昭武	이인거의 역모	6명	1627. 11. 26	1628. 9. 13
4	寧社	유효립의 역모	11명	1628. 3. 15	
5	寧國	심기원의 역모	9명	1644. 5 .17	1646. 9. 19

1623년(인조 1) 광해군을 몰아내고 정권을 획득하는 데 성공한 인조는, 자신을 지지한 세력을 공신으로 녹훈하기 위한 감훈을 명하였다.[28] 이에 공신 녹훈을 위한 제반 절차가 시작되어 공신의 등급이 정해지고 녹훈도감이 설치되었다.[29] 이처럼 정사공신의 녹훈이 이루어지고 회맹제의 개최를 위한 준비가 진행되었으나 국가재정의 부족으로 인해 회맹제를 바로 거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인조는 일의 순서를 바꾸어 원종공신을 먼저 녹훈하고 이듬해 봄에 회맹제를 시행하겠다는 전교를 내렸다.[30] 이는 1년의 예산을 거의 소진했던 윤10월부터 공신 녹훈이 시작되어 생긴 문제였으므로, 내년 봄의 세수로 예산을 보충한 후 회맹제를 거행하고자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와중인 1624년(인조 2) 1월 李适이 역모를 모의한다는 고변이 접수되고[31] 곧이어 이괄의 난이 발생하였다.[32] 반정에 주도적 역할을 하며 정사공신으로 녹훈되었던 이괄이 일으킨 반란은 정권을 위협하기에 충분하였다. 인조는 반란군에 의해 임진강 방어선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공주로 피신하였으며 도원수 張晩 등이 안현에서 대승을 거두고 이괄이 참살되고 나서야 서울로 돌아올 수 있었다.[33] 이렇게 해서 약 1달간 지속되었던 이괄의 난이

28) 『靖社振武兩功臣謄錄』「癸亥(1623)閏十月十八日」.
29) 고민정, 「조선전기 충훈부의 설립과 역할」, 『진단학보』 133, 진단학회, 2019, 87면.
30) 『靖社振武兩功臣謄錄』「癸亥(1623)閏十一月二十六日」.
31) 『인조실록』 4권, 인조 2년(1624) 1월 17일 임신.
32) 『인조실록』 4권, 인조 2년(1624) 1월 24일 기묘.
33) 신병주, 「1624년 이괄의 변의 경과와 성격」, 『고성이씨 가문의 인물과 활동』, 일지사, 2010,

진압되었고, 이어서 공적을 세운 장만 등을 振武功臣으로 녹훈하는 절차에 돌입하였다.[34]

이렇듯 정사공신의 녹훈이 마무리되기 전에 진무공신을 새로 녹훈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공신의 녹훈에 관한 논의는 1624년(인조 2) 6월부터 다시 시작되었다. 대신들은 올봄에 녹훈도감의 일을 재개하기로 했었으나 지금까지 지연되었고 내년 봄에는 인조의 책봉을 인준하는 誥命을 가져오는 詔使를 응대해야 할 일이 예정되었으므로[35] 지금처럼 일이 없을 때 초상화를 제작하는 일 등을 먼저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36] 또한 9월에 회맹제의 일정을 논의할 때에도 국가의 大禮가 연달아 예정되어 있으므로 豊呈과 私廟親祭를 끝낸 후에 날짜를 정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인조가 회맹제를 내년 봄에 거행하도록 하되, 정사공신만이 아니라 진무공신까지 동시에 참여하게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37] 그리고 진무공신을 위해 설치된 녹훈도감을 정사공신의 녹훈도감과 하나로 합하게 하여 일의 편리와 비용의 절감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였다.[38] 다시 말해 정사공신의 회맹제를 시행하기 전에 진무공신이 녹훈되었으므로 이들의 회맹제를 동시에 거행함으로써 비용을 줄이고 일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이렇게 정사·진무공신의 녹훈이 모두 끝나고 다시 공신의 녹훈이 이루어진 것은 1627년(인조 5) 9월에 이르러서였다. 이때 정묘호란으로 후금과 강화를 맺은 것에 반대하여 李仁居가 강원도 횡성으로 중심으로 군사를 모아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이 횡성 유생 陳克一의 고변과 원주목사 洪霳의 장계를 통해서 전해졌다.[39] 이 반란은 관군에 의해 곧바로 진압되고, 이인거가 극형에 처해지며 일단락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조정에 알린 원주목사

245-251면.

34) 『인조실록』 5권, 인조 2년(1624) 3월 8일 임술.

35) 한명기, 「17세기 初 仁祖反正과 朝明關係」, 『제26회 동양학 학술회의록』,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1996, 381-383면.

36) 『靖社振武兩功臣謄錄』 「同月二十七日」.

37) 『靖社振武兩功臣謄錄』 「甲子(1624)九月十一日」.

38) 『靖社振武兩功臣謄錄』 「甲子(1624)十月初四日」.

39) 『승정원일기』 19책, 인조 5년(1627) 10월 1일 갑오.

홍보 등을 녹훈하라는 하교가 내려지고 소무공신의 녹훈을 위한 감훈이 시작되었다.[40] 공신의 등급이 정해지고 훈호가 정해졌으며[41] 녹훈도감의 당상이 의망되고 도감사목이 마련되는 등[42] 일련의 절차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이때 또 다른 변란이 발생하였다. 1628년(인조 6) 정월 인조반정 후 귀양 가 있던 柳孝立이 제천과 원주 등지에서 세력을 모아 인성군을 추대하고자 병사를 모으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는 金振聲・崔山輝・許禑 등의 고변이 잇따르면서 전모가 밝혀졌고[43] 주모자였던 유효립을 처형하고[44] 인성군을 진도에 위리안치함으로써 마무리되었다.[45] 이에 공적을 세운 許禑을 위시하여 영사공신의 녹훈이 바로 시작되었다.[46] 이처럼 소무・영사공신도 상당히 짧은 간격으로 공신의 녹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비의 절감 차원에서 정사・진무공신과 같이 녹훈도감을 합설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47] 즉 賞格부터 동시에 논의되기 시작했으며[48] 회맹제까지 병합해서 이루어졌다.

소무・영사공신 회맹제는 공신이 녹훈되고 약 6개월 후에 개최되었다. 본래 회맹제는 녹훈도감이 제례에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데 약 5개월이 소요되어서 7-8월 사이에 거행하려 하였고, 관상감에서도 8월 6일을 길일이라고 하였으므로 이 날짜에 맞춰 준비하였다.[49] 그러나 사직대제의 일정이 잡히면서 회맹제는 24일로 연기되었고, 24일은 과거의 초시 일정과 또다시 겹치게 되어 결국 9월로 미루어져 거행되었다.[50]

인조대의 마지막 회맹제는 1646년(인조 24)에 시행되었다. 1644년(인조

40)『昭武寧社錄勳都監儀軌』「丁卯(1627)十月十九日」
41)『昭武寧社錄勳都監儀軌』「勳勳單子」
42)『昭武寧社錄勳都監儀軌』「都監事目」.
43)『인조실록』18권, 인조 6년(1628) 1월 3일 을축.
44)『승정원일기』20책, 인조 6년(1628) 1월 12일 갑술.
45)『인조실록』18권, 인조 6년(1628) 1월 21일 계미.
46)『승정원일기』20책, 인조 6년(1628) 1월 27일 기축;『승정원일기』20책, 인조 6년(1628) 3월 15일 병자.
47)『승정원일기』21책, 인조 6년(1628) 4월 16일 정미.
48)『昭武寧社錄勳都監儀軌』「五月十六日」.
49)『昭武寧社錄勳都監儀軌』「六月初四日禮曹牒呈」.
50)『昭武寧社錄勳都監儀軌』「六月初四日啓辭」.

22) 黃瀷과 李元老 등이 고변하여 沈器遠이 모반을 일으켜 懷恩君을 왕으로 추대하려 했다는 내용이 알려짐에 따라[51] 역모에 가담한 자를 처벌하고 고변한 자를 녹훈하겠다는 전교가 내려지게 되었다.[52] 이에 따라 공신 녹훈을 위한 감훈이 이루어지고 寧國功臣의 등급이 정해지는 등[53] 일련의 절차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약 4개월 후 회맹제 시행을 위한 준비는 마무리되었으나 이미 초겨울로 접어든 날씨가 문제가 되었다. 추운 날씨에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장시간 외부에서 행해지는 제례를 감당하기에는 국왕의 건강이 문제가 되었으므로, 회맹제를 이듬해 봄으로 연기하였다.[54] 그러나 이듬해 봄 소현세자의 귀국과 함께 청나라 칙사의 행차가 예정되면서, 회맹제는 다시 연기되었고,[55] 소현세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뒤[56] 봉림대군의 왕세자 책례가 예정되었기 때문에,[57] 회맹제는 또다시 연기되었다.[58]

이렇게 한해가 지나고 회맹제의 일정을 다시 논의할 즈음, 柳濯과 權大用이 반역을 모의한다는 李碩龍의 고변이 이루어져[59] 관련자의 처벌과 함께 고변한 자에 녹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60] 그리고 이석룡을 영국공신으로 병합하여 녹훈하겠다는 결정이 내려지면서[61] 이를 위해 준비할 일들이 추가되었고[62] 대간들이 이 문제를 다시 논박하였기 때문에 회맹제는 또 미루어지게 되었다.[63] 그리고 마침내 영국공신을 녹훈한 지 2년 6개월이 지난 1646년(인조 24)에 이르러서야 제반 사항들이 정리되면서 회맹제가 거행

51) 『인조실록』 45권, 인조 22년(1644) 3월 21일 기유.
52) 『인조실록』 45권, 인조 22년(1644) 5월 4일 신묘.
53) 『寧國功臣錄勳都監儀軌』 「同月初六日勘勳單子」.
54) 『승정원일기』 89책, 인조 22년(1644) 10월 11일 을축; 『승정원일기』 89책, 인조 22년(1644) 11월 23일 정미.
55) 『인조실록』 45권, 인조 22년(1644) 12월 4일 무오; 『인조실록』 46권, 인조 23년(1645) 1월 27일 신해.
56) 『인조실록』 46권, 인조 23년 6월 10일 신유.
57) 『인조실록』 46권, 인조 23년(1645) 9월 27일 을해.
58) 『승정원일기』 91책, 인조 23년(1645) 윤6월 24일 갑진.
59) 『인조실록』 47권, 인조 24년(1646) 3월 28일 을해.
60) 『인조실록』 47권, 인조 24년(1646) 5월 16일 신유.
61) 『승정원일기』 94책, 인조 24년(1646) 6월 13일 무자.
62) 『승정원일기』 94책, 인조 24년(1646) 6월 18일 계사.
63) 『寧國功臣錄勳都監儀軌』 「丙戌(1646)八月同日」.

될 수 있었다.64)

3. 공신회맹제의 참여 인원과 공신 자손

인조대에 거행되었던 세 차례의 회맹제에 관해서는 『功臣會盟錄』이 전해진다. 정사·진무공신이 녹훈되면서 거행된 회맹제는 『十七功臣會盟錄』이 있고 소무·영사공신이 녹훈되면서 거행된 회맹제는 『十九功臣會盟錄』이 있으며 영국공신의 녹훈으로 거행된 회맹제의 기록은 『二十功臣會盟錄』으로 남아있다. 이들 『공신회맹록』에는 회맹제에 사용된 祭文과 더불어 회맹제에 실제 참여했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회맹제에 참여했던 이들의 인적정보를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

다음 〈표 2〉는 『공신회맹록』을 토대로 회맹제에 참여한 인원을 정리한 것이다.65)

〈표 2〉 인조대 공신회맹제의 참여 인원

번호	연 도	명 칭	구공신 측	신공신 측	소 계
1	1625년	17공신회맹제	304명	90명	394명
2	1628년	19공신회맹제	350명	22명	372명
3	1646년	20공신회맹제	328명	3명	331명

위의 내용을 토대로 공신회맹제에 참여한 이들의 숫자를 파악하면 각각 394명, 372명, 331명으로 나타나며 회맹제가 거듭될수록 참여 인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상식적으로 보면 공신의 녹훈이 진행될수록 새로운 공신이 추가되므로 공신 전체의 숫자는 늘어나야 할 것 같고 회맹제에는 신공신과 구공신이 모두 참여하였으므로 회맹제가 거듭될수록 참여 인원이 증가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이 일어난 것은 무엇

64) 『인조실록』 47권, 인조 24년(1646) 9월 3일 병오.

65) 〈표 2〉는 『十七功臣會盟錄』, 『十九功臣會盟錄』, 『二十功臣會盟錄』을 토대로 작성되었고 두 종류 이상의 공신으로 녹훈된 자는 처음 녹훈된 공신호에 포함하여 정리하였다.

때문일까?

그 이유는 첫째, 신공신의 녹훈 규모가 점차 줄어든 것과 더불어 기존 공신이 삭훈되면서 회맹제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신의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우선 신공신의 규모를 놓고 보면 정사·진무공신이 85명, 소무·영사공신은 17명, 영국공신은 9명이 각각 녹훈되었으므로 회맹제를 거행할수록 새롭게 회맹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이들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사공신 이전까지 녹훈된 구공신은 모두 859명이었으나 정치적 부침이 계속됨에 따라 정사공신이 녹훈될 때까지 공신 자격을 유지했던 이들은 560명 정도였으므로 대략 300명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사공신만 놓고 보아도 총 53명이었던 공신이 46명까지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괄의 난으로 인해 이괄과 金元亮을 비롯하여[66] 李興立이 삭훈되었고[67] 심기원의 역모로 인해 심기원과 그의 동생 沈器成이 삭훈되었으며[68] 金自點, 金鍊도 역모죄로 삭훈되었다.[69] 이에 따라 삭훈된 공신과 그 자손들은 회맹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였다.

둘째, 임진왜란을 경험한 이후로 공신 중에서도 변방의 외직에 종사한 이들은 회맹제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즉 그 이전까지는 외직에 종사하더라도 모두 회맹제의 참여를 위해 상경하게 하였으나 임진왜란이 끝난 뒤 회맹제를 거행할 때는 남쪽 변방의 방비가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경상좌병사, 밀양부사, 순천부사 등은 그대로 남아 직무에 종사하게 하였다.[70] 그런데 17공신 회맹제를 거행할 때는 남쪽보다 북쪽 변방의 방비가 더 중요했으므로 평안·함경·황해병사, 동관첨사, 서북 지방의 수령과 변장 등은 직무에 종사하게 하고 충청·전라병사, 전라좌·우수사, 남쪽 지방 수령은 참석하게 하였다.[71]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전례가 되어 그 이후의 회맹제에도 동일하게 적

66) 『인조실록』 6권, 인조 2년(1624) 6월 12일 갑오.
67) 『인조실록』 5권, 인조 2년(1624) 4월 5일 무자; 『숙종실록』 16권, 숙종 11년(1685) 8월 3일 신묘.
68) 『인조실록』 45권, 인조 22년(1644) 3월 21일 기유.
69) 『효종실록』 7권, 효종 2년(1651) 12월 17일 경신; 『효종실록』 7권, 효종 2년(1651) 12월 13일 병진.
70) 『선조실록』 171권, 선조 37년(1604) 2월 22일 계묘.

용되었다.[72] 따라서 정치・외교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방의 요충지를 수비하는 일이 중요해지면서 해당 지역의 관직에 종사하던 공신과 그 자손들의 회맹제 참여가 제한된 것이다.

셋째, 身病 또는 喪中으로 미처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호성공신 李好閔은 70세가 넘은 나이에 중풍까지 앓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부득이 상소를 올려 회맹제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73] 황간현감으로 재직하다가 회맹제의 참석을 위해 상경한 영사공신 黃繙도 갑작스러운 발병으로 끝내 불참할 수밖에 없었다.[74] 이에 17공신 회맹제에서는 신병으로 인해 3명, 상중으로 인해 8명이 참여하지 못하였고[75] 19공신 회맹제에서는 신병으로 인해 4명, 상중으로 인해 17명이 참여하지 못하였다.[76]

이 같은 이유로 참여하지 못한 이들을 제외하고, 참여한 이들만을 대상으로 녹훈 시기에 따라 시기별로 구분하면 첫째 선조대 이전, 둘째 선조대, 셋째 인조대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참여자의 혈연관계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면 첫째 공신만 참여한 사례, 둘째 공신과 아들들이 함께 참여한 사례, 셋째 자손들만 참여한 사례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공신과 자손들이 참여한 사례는 공신 본인과 적장자가 참여한 경우, 본인과 적장자와 친자가 참여한 경우, 본인과 친자가 참여한 경우로 세분된다. 자손들만 참여한 사례도 참여자의 성격에 따라 적장자만 참여한 경우, 친자만 참여한 경우, 적장자와 친자가 참여한 경우, 친자와 적장손이 참여한 경 경우, 적장손만 참여한 경우로 세분된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은 첫째, 선조대 이전에 녹훈된 공신들은 모두 적장손만 회맹제에 참여하였다. 이는 17・19・20공신 회맹제가 공신, 적장자, 친자가 모두 사망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가계를 승계

71)『승정원일기』 5책, 인조 3년(1625) 3월 23일 신미.
72)『승정원일기』 94책, 인조 24년(1646) 6월 10일 을유.
73)『승정원일기』 8책, 인조 3년(1625) 4월 10일 정해.
74)『승정원일기』 22책, 인조 6년(1628) 9월 3일 경신.
75)『승정원일기』 8책, 인조 3년(1625) 8월 9일 을유.
76)『승정원일기』 23책, 인조 6년(1628) 10월 11일 무술.

한 적장손이 대표로 참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선조대 녹훈된 공신들은 17·19공신 회맹제만 두고 보면 공신 본인 또는 적장자가 참여하는 비중이 높았다가 20공신 회맹제에서는 적장손이 참여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아졌다. 이 역시도 시간이 갈수록 공신 본인과 그의 아들들이 사망하면서 적장손의 참여 비중이 높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인조대 녹훈된 공신의 경우, 17공신 회맹제에서는 공신 본인, 본인과 적장자의 참여 비율이 높고 19공신 회맹제에서는 적장자, 공신 본인, 본인과 적장자의 순서로 참여 비율이 높은 편이다. 그리고 20공신 회맹제에서는 적장자와 친자, 공신 본인의 참여 비율이 높다. 더 세부적으로 분석했을 때 비교적 비슷한 시기에 녹훈된 정사·진무 공신과 소무·영사공신의 경우는 공신 본인, 본인과 적장자의 참여가 높았으나 나중에는 적장자와 친자의 참여가 높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에 비해서 비교적 최근에 녹훈되어 신공신에 해당하는 영국공신은 공신 본인의 참여 또는 본인과 적장자의 참여만 확인된다. 이러한 모습은 녹훈 시점과 회맹제의 거행 시점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녹훈된 초기에는 공신 본인과 아들들의 참여 비중이 높았으나 후대에는 이들이 사망하게 되면서 결국 적장손의 참여 비중이 높아졌던 것으로 이해된다.

다음 〈표 3〉은 앞서 설명한 대로 회맹제 참여자를 혈연관계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여 나타낸 것이다.

〈표 3〉 회맹제 참여자의 유형별 분류

17공신회맹제										
왕별	칭호	親	親+嫡長	親+嫡長+子	親+子	嫡長	嫡長+子	子	子+嫡長孫	嫡長孫
선조 이전	開國 – 靖難	–	–	–	–	–	–	–	–	188
선조	光國	–	–	–	–	3	1	–	–	4
	平難	1				2	1	2	1	4
	光國平難	–	–	–	–	1	1	1	–	2
	光國扈聖	–	–	–	–	–	2	–	–	–
	平難扈聖	–	–	–	–	–	1	–	–	–

	扈聖	15	2		1	36	4	4	-	11
	宣武	-	-	-	-	7	1	1	-	1
	淸難	-	-	-	-	4	-	-	-	1
인조	靖社	27	12	1	2	-	-	-	-	-
	振武	9	6	-	-	9	-	-	-	-
19공신회맹제										
왕별	칭호	親	親+嫡長	親+嫡長+子	親+子	嫡長	嫡長+子	子	子+嫡長孫	嫡長孫
선조 이전	開國 - 靖難	-	-	-	-	-	-	-	-	155
선조	光國	-	-	-	-	3	-	-	-	3
	平難	-	-	-	-	5	-	1	-	3
	光國平難	-	-	-	-	1	1	-	1	3
	光國扈聖	-	-	-	-	-	1	1	-	-
	扈聖	7	-	-	1	41	4	1	1	8
	宣武	-	-	-	-	7	1	-	1	-
	淸難	-	-	-	-	1	1	-	-	1
인조	靖社	34	3	-	1	13	-	1	-	-
	靖社寧社	-	-	-	-	1	-	-	-	-
	振武	6	9	1	1	4	-	-	-	-
	昭武	3	3	-	-	-	-	1	-	-
	寧社	9	1	-	-	1	-	-	-	-
20공신회맹제										
왕별	칭호	親	親+嫡長	親+嫡長+子	親+子	嫡長	嫡長+子	子	子+嫡長孫	嫡長孫
선조 이전	開國 - 靖難	-	-	-	-	-	-	-	-	146
선조	光國	-	-	-	-	-	-	-	-	7
	平難	-	-	-	-	-	5	-	-	3
	光國平難	-	-	-	-	-	1	-	-	4
	光國扈聖	-	-	-	-	-	-	-	-	1
	平難扈聖	-	-	-	-	-	-	-	-	1
	扈聖	-	-	-	-	-	16	-	-	32
	宣武	-	-	-	-	-	3	-	-	7
	淸難	-	-	-	-	-	2	-	-	2
인조	靖社	5	4	5	2	-	14	1	3	1
	靖社寧國	-	1	-	-	1	-	-	-	-
	振武	2	1	2	-	-	14	1	-	-
	昭武	1	2	-	-	-	2	-	-	-
	寧社	4	2	-	-	-	2	-	-	-
	寧國	1	1	-	-	-	-	-	-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맹제에는 공신의 자손들이 함께 참여하였으나, 회맹제는 일차적으로 공신을 대상으로 거행해온 전례였기 때문에 자손들이 처음부터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조선에서 처음 개최된 개국공신 회맹제에는 공신들만 참여하였고 개국공신 회맹제가 끝난 후에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공신의 아들・손자・동생・사위들이 회맹제를 별도로 거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77] 또한 신・구 공신이 함께 모인 첫 사례인 삼공신의 회맹제에서도 공신만의 회맹제가 끝난 후에 다시 공신 적장자들이 모여 회맹제를 거행했던 모습도 관찰되기 때문이다.[78]

공신과 그의 아들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회맹제가 거행된 것은 사공신 회맹제가 최초이다. 이때는 삼공신의 적장자・친자와 정난공신 및 그의 적장자・친자까지 147명이 모여 제례를 거행하였다.[79] 그러면 그 이전과 달리 사공신 회맹제부터 갑자기 공신의 아들들이 참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우선 삼공신의 생몰년부터 파악해보았다.[80] 첫째, 개국공신은 통틀어 55명이 녹훈되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훈적이 삭제되었던 이들을 제외하면 39명이 된다. 이 중에서 가장 늦게까지 생존했던 사람은 李稷과 閔汝翼 2명이다. 이직은 1362년(공민왕 11)에 출생하여 1431년(세종 13) 70세의 일기로 사망하였고, 민여익은 1360년(공민왕 9)에 출생하여 1431년(세종 13) 68세의 일기로 사망하였다.

둘째, 정사공신은 29명이 녹훈되었는데 이 역시 훈적이 삭제된 이들을 제외하면 17명이 된다. 이 중에서 가장 늦게까지 생존했던 사람은 李福根인데, 생년은 확실치 않으나 1421년(세종 3)에 사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좌명공신은 48명이 녹훈되었으나 훈적을 유지한 사람만 간추리면 39명이 된다. 이 중에서 가장 늦게까지 생존한 사람은 宋居信인데, 1369년(공민왕 18)에 출생하여 1447년(세종 29)에 69세의 일기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개국공

77)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1392) 9월 28일 병오.
78)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1417) 3월 21일 정미.
79) 『단종실록』 10권, 단종 2년(1454) 2월 13일 갑오.
80) 공신의 생몰년은 『朝鮮王朝實錄』 및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과 「민족문화대백과사전」을 바탕으로 파악하였다.

신은 1431년(세종 13) 이후로, 정사공신은 1421년(세종 3) 이후로, 좌명공신은 1447년(세종 29) 이후로 모두 사망하였기 때문에, 1454년(단종 2) 사공신 회맹제에 참여할 수 있는 구공신은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구공신을 대신하여 그의 적장자・친자들을 참여시키면서, 신공신의 적장자・친자까지도 함께 참여시킨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또한 이로부터 대략 20년 후에 거행되었던 1471년(성종 2) 八功臣 회맹제부터는 참여 대상이 공신의 적장자・친자뿐 아니라, 적장손까지로 확대되었는데,[81] 이 역시도 적장자・친자가 사망 등의 이유로 직접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다음의 후손까지 포함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회맹제가 신공신과 구공신이 모두 참여하는 형태로 바뀐 후, 시간이 갈수록 구공신들이 사망하게 되면서 회맹제에 참여할 수 있는 친공신이 없어지게 되었고, 이에 친공신을 대신하여 그의 자손들을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던 것 같다. 더욱이 계속해서 전례에 따라 진행되는 의례의 특성상 회를 거듭할수록 공신 자손의 회맹제 참여는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굳어지게 되면서[82] 공신 자손들의 참여가 이어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구공신을 대신하여 그 자손들이 회맹제에 참여하게 된 것은 공신 사후에 그 지위를 일정 부분 자손에게 세습하게 했던 공신우대책과도 연결지어 설명할 수 있다. 조선은 공신을 侯로 봉하여 세습하게 하는 古制의 영향을 받아 공신을 봉군하는 법을 만들었고 공신이 사망하고 나면 2품 이상의 품계에 오른 그의 자손들도 봉군을 승습할 수 있게 하였다.[83] 또한 불천위가 된 공신의 봉사를 승계하는 적장 자손들은 각별히 우대하여 衆子孫과 달리 대수의 제한 없이 충의위에 입속하게 하였다.[84] 즉 국초부터 이미 공신의 자손을 특별한 존재로 보아 우대하고 있었으므로, 공신이 사망한 뒤에 공신을 대신하여 자손들이 회맹제에 참여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통상 친공신을 임명하던 충훈부의 有司堂上도 친공신

81) 『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1471) 4월 6일 무신.
82) 『승정원일기』 21책, 인조 6년(1628) 6월 6일 을미.
83) 『성종실록』 5권, 성종 1년(1470) 5월 8일 을유.
84) 이준구, 앞의 책, 166-168면.

들이 모두 사망한 후에는 공신의 자손을 임명하거나[85] 친공신이 행하던 능묘의 수위도 그의 적장자손들이 파견되어 수행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86]

더욱이 상대적으로 촉박하게 정해지는 회맹제 일정에 맞추어 공신뿐 아니라 그의 자손들에게까지 참여를 통지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가 이들의 인적 정보에 대한 파악을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국초부터 충훈부는 『功臣子孫錄』, 『功臣子弟罪名置簿錄』 등을 작성해왔으며[87] 전란으로 인해 이러한 기록이 소실된 이후에도[88] 주기적으로 功臣家로부터 '功臣世系單子'를 제출받아 새로이 『공신자손록』을 작성하여 적장자손 및 중자손의 명단 파악은 물론이고 親盡한 사항까지 일일이 관리하고 있었다.[89] 따라서 회맹제의 일정이 확정되면 충훈부로부터 명단을 인계받아 경외의 공신 자손들에게 속히 상경하라는 연락을 취할 수 있었다.[90]

4. 공신회맹제의 참여자 논상과 공신 자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조대는 정사·진무공신을 녹훈한 결과로 1625년(인조 3) 4월에 첫 회맹제가 거행되었다. 회맹제를 마친 후 인조는 이에 참여했던 구공신과 적장 자손을 시상하기 위해 賞格을 논의하라는 전교를 내렸다.[91] 그런데 이 당시는 상격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다. 우선 첫 번째로 회맹제 참여자들에게 대한 시상은 정해진 법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전에 개최되었던 회맹제의 상황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였으나, 이미 전란을 겪은 후라 충훈부에서 관리하던 회맹제에 관한 기록이 거의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85) 『忠勳府謄錄』 7 「康熙二十一年(1682)九月初十日」.
86) 『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1396) 8월 16일 신축; 『大典通編』 「各墓」.
87) 『성종실록』 53권, 성종 6년(1475) 3월 5일 갑인; 『성종실록』 139권, 성종 13년(1482) 3월 1일 기사.
88) 『선조실록』 56권, 선조 27(1594) 10월 15일 기미.
89) 김명화, 「朝鮮後期 忠勳府文書 硏究」,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9, 37-57면.
90) 『승정원일기』 23책, 인조 6년(1628) 6월 6일 을미
91) 『승정원일기』 5책, 인조 3년(1625) 4월 25일 임인.

인조 이전에 왕위에 올랐던 광해군대에도 위성・정운・익사・형난공신이 대거 녹훈되어 회맹제를 거행했던 내용이 『충훈부등록』에 정리되어 있었으나[92] 주지하는 바와 같이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인조는 광해군을 廢君이라 하며 개혁의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자료가 있다고 해도 이를 준용하지 않으려 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충훈부는 임진왜란 이후에 이루어진 1604년(선조 37) 호성・선무・청난공신의 녹훈으로 거행된 15공신 회맹제를 중심으로 전후의 기록을 최대한 수집・정리하였다.[93]

충훈부가 남은 기록을 토대로 확인한 회맹제 후의 시상 내용은 다음과 같다.[94] 첫째 개국공신 회맹제에 참여한 공신에게 관작 또는 絹羅・白金을 내려졌다는 점이다. 이때는 녹훈된 공신이 개국공신뿐이었으므로 당연하게도 다른 공신의 참여는 없었고 공신 자손들이 회맹제에 참여할 자격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개국공신만 포상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개국공신들은 「공신교서」에서 명시한 공식적인 포상 외에도 회맹제의 참여로 인해 또 다른 혜택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둘째 靖難功臣의 녹훈 후 사공신 회맹제에 참여했던 공신과 적장 자손에게 관작 또는 虎皮・鹿皮・綾緞을 내렸다는 점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공신 회맹제부터는 공신의 적장자손들이 회맹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었으므로 공신 및 적장 자손을 대상으로 시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그 이후로도 회맹제에 참여한 이들에게는 관작 또는 馬匹・鄕表裏 등의 물품을 하사하였음이 확인된다는 점이다. 이처럼 충훈부에서 확인한 전례들을 보면 그때마다 국왕의 주도 아래 회맹제에 참여한 이들을 대상으로 관작 또는 물품을 하사하는 特恩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에서도 관작을 내리는 일은 대상자의 품계 및 관직의 재임 여부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였다.[95] 즉 資窮 準職의 여부에 따라 加資의 대상

92) 고민정, 「조선 후기 『충훈부등록』의 자료적 검토」, 『민족문화연구』 86,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20a, 205-206면
93) 『선조실록』 180권, 선조 37년(1604) 10월 29일 을해.
94) 『승정원일기』 5책, 인조 3년(1625) 4월 25일 임인.
95) 『선조실록』 180권, 선조 37년(1604) 10월 29일 을해.

이 구분되었던 것이다. 첫째 관직이 없는 자에게 한 자급씩 더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었다. 둘째 자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준직을 역임하지 못한 자는 당상관으로 승격하지 못한다는 법전의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자급을 올리는 대신 마필·표리 등을 내려주게 하였다. 셋째 자궁으로 준직한 자에 대해서는 자급을 올려 당상관으로 승격하게 하였다. 넷째 노인을 우대하는 법을 적용하여 70세 이상인 자 가운데 실직 4품 이상을 역임한 경우에 한해서는 당상관으로 올려주게 하였다. 이에 따라 회맹제에 참여한 이들 중에서 구공신에 해당하는 연양군 金繼韓 등 10여 명에 대한 가자가 시행되었고, 공신의 적장 자손 중에서도 호성공신 柳永慶의 적장손 柳廷亮 등 12명에 대한 가자가 시행되었다. 또한 광국·호성공신 윤근수의 적장자 前僉正 尹晥 등은 공신의 적장 자손이면서 나이가 70세이며 4품의 실직을 역임했다는 조건에 충족하였기 때문에 가자가 이루어지게 되었다.[96]

이처럼 회맹제가 거행된 이후에는 구공신과 적장 자손들은 회맹제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하사품을 받거나 가자를 받는 전례가 오래도록 지속되어 왔으며 인조대에 들어서도 이와 같은 관례에 따라 상격이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전부터 대간에 의해 지적된 바와 같이 회맹제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상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있었지만,[97] 결국 공신의 적장 자손들은 회맹제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대를 이어가며 혜택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었다.

인조대에 들어서 두 번째 회맹제는 소무·영사공신의 녹훈이 연이어지면서 1628년(인조 6) 9월에 거행되었다. 이에 인조는 전과 같이 회맹제에 참여한 자들에 대한 상격 시행을 명하였다. 즉 구공신의 적장 자손에 대한 가자를 명하였을 뿐아니라, 당하관으로서 자궁에 올랐으나 준직을 거치지 못한 공신도 특별히 가자할 것을 명하여 상격의 시행 범위가 더 넓어지게 되었다.[98] 그러나 인조의 이러한 결정은 사간원의 반대에 부딪혀 신속히 처리되

96) 『승정원일기』 6책, 인조 3년(1625) 6월 15일 신묘.
97) 『선조실록』 185권, 선조 38년(1605) 3월 19일 계사.
98) 『승정원일기』 23책, 인조 6년(1628) 10월 2일 기축.

지 못하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사간원은 회맹제를 거행한 뒤에 공신과 적장 자손에게 작위를 내리거나 특정 물품을 하사하는 것이 조종의 옛 규례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정사·진무공신의 회맹제가 거행된 지 3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또다시 같은 이유로 이들에게 가자할 수는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반대하게 된 것이다.[99]

이에 인조는 회맹제 참여자 상격에 대한 전례를 다시 상고하라는 명을 충훈부에 내렸다. 충훈부는 17공신 회맹제 참여자의 상격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이미 본부에서 가진 기록과 민간의 기록을 최대한 수집하여 보고한 적이 있었으나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여기고, 더 자세한 고증을 위해서 역대 왕조의 실록을 열람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하였다. 즉 역대 회맹제를 대상으로 상격이 있었던 사례와 없었던 사례를 구분한 다음, 상격이 있었던 사례는 더 세분하여 물품만 하사했던 사례와 가자만 했던 사례로 구분하여 보고하였다.[100] 그리고 해당 내용을 확인한 인조는 대신 간의 논의를 거쳐 의정할 것을 명하였고, 결국 원래 인조가 명한 대로 공신 적장 자손을 가자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사간원은 충훈부가 상고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회맹한 뒤에 관작과 물품을 하사한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靖社·좌명·적개·익대공신 때에는 물품만 하사하였을 뿐이고 신공신에게도 가자한 일이 없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대신 간의 논의에서도 관직과 자급을 남발하여 국가재정이 매우 위축되었으므로 절약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시의를 참작하여 처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므로 해당 명을 환수하기를 재차 요청하였다.[101]

인조는 사간원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이미 대신 간의 논의를 거쳐 의정된 사안이므로 재차 논의할 것이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계속된 사간원의 반대로 인해 결국 기존의 명을 거두게 되었다. 즉 회맹제를 개최한 후 구공신과

99) 『승정원일기』 23책, 인조 6년(1628) 10월 8일 을미.
100) 『승정원일기』 23책, 인조 6년(1628) 11월 2일 기미.
101) 『승정원일기』 23책, 인조 6년(1628) 11월 13일 경오.

적장 자손에게 가자하는 것은 이미 규례가 되어 폐지할 수는 없으나 짧은 기간 동안 두 차례의 회맹제가 거행되었다는 현실을 참작하여 하는 수 없이 공론을 따르겠지만 이를 전례로 남기는 말 것을 명하였다.[102] 이처럼 19공신 회맹제에 참여한 이들에게는 가자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羅緋과 百金 등의 하사품을 내려주는 것으로 일단락되는 듯하였다.[103]

그러나 인조가 회맹제 참여자들에게 내릴 하사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70세가 된 공신의 적장 자손들을 가자하라는 명을 내렸기 때문에 논란이 이어지게 되었다.[104] 사헌부는 이에 대해서도 공신의 적장 자손 중에서 70세가 된 사람이 30여 명이나 된다는 점, 연로한 친공신조차도 이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데에 비해, 공신의 적장 자손을 지나치게 우대한다는 점을 들어 반대를 분명히 하였다.[105]

더욱이 충훈부가 가자의 대상자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적개・좌리 공신 金嶠의 적장손 金得元과 광국공신 尹根壽의 적장자 尹晥은 이미 실직으로 僉知에 제수되었으므로 봉군의 대상에 해당되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106] 이에 사헌부는 이미 공신의 적장 자손 중에서 실직을 역임하고 70세가 된 자와 4품 및 당상관으로 80세가 된 자는 회맹제 후 노직을 받았던 전례를 지적하며, 당상관이면서 80세가 되지 않은 자에게 가자하는 것은 개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단언하였다. 더욱이 이다음에 노직으로 가자되어 봉군에까지 이르게 되면 녹봉의 소비가 적지 않게 되므로 국가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즉 무궁한 폐단을 열게 되는 단초가 되므로 70세 이상의 적장 자손을 가자하라는 명을 환수할 것을 요청하였다.[107]

하지만 인조는 7-80세 노인을 우대하는 규례가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108] 지금은 회맹제으로 인해 가자하였으므로 불가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102) 『승정원일기』 23책, 인조 6년(1628) 12월 5일 신묘.
103) 『승정원일기』 24책, 인조 7년(1629) 1월 11일 정묘.
104) 『인조실록』 20권, 인조 7년(1629) 1월 17일 계유.
105) 『승정원일기』 24책, 인조 7년(1629) 2월 7일 계사.
106) 『승정원일기』 24책, 인조 7년(1629) 1월 27일 계미.
107) 『승정원일기』 24책 인조 7년(1629) 2월 18일 갑진.
108) 『승정원일기』 24책 인조 7년(1629) 2월 14일 경자.

로 인해 봉군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109] 결국 이 문제는 인조의 뜻이 관철되면서 70세 이상의 공신 자손에게는 가자가 이루어졌다. 다만 이번 가자를 통해서 봉군의 자격을 갖추게 되더라도 실제 봉군하지 않음으로써[110] 사헌부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였다.

이렇듯 짧은 시기를 두고 개최된 두 번째 회맹제는 대간의 반대로 인해 전후의 회맹제에서 시행된 만큼의 상격을 모두 시행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인조의 입장에서 보면 안으로는 정권을 획득한 뒤에도 왕권을 위협할 수준의 역모가 이어지고 있었고 밖으로는 새롭게 부상한 후금과의 경색된 대외관계로 전란까지 겪게 된 상황에서 정치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인조는 대간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면서도 최대한 그 전과 같은 수준에서의 상격을 시행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덧붙여 현존하는 고문서 중에는 1646년(인조 24) 20공신 회맹제가 끝난 후 구공신의 적장손을 가자한 告身이 남아 있어 공신 적장손이 실제 가자되었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고신은 정국공신 鄭眉壽의 적장손 鄭孝俊(1577-1665)을 通政大夫에 임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고신의 발급 사유는 그가 구공신의 적장으로서 회맹제에 참여했기 때문에 가자되었다고 명시되었다. 『공신회맹록』에 따르면 정미수家에서는 鄭欽(1557-1635)이 17·19공신 회맹제에 참여하였고 20세 공신 회맹제에는 정흠의 적장자인 정효준이 처음 참여하였다. 회맹제 당시 정효준은 정3품 하계인 통훈대부의 품계로 실직 自如道察訪에 종사하고 있었고[111] 나이가 70세에 이르렀으므로 회맹제 후 70세 이상으로 실직을 역임한 자에게 가자한다는 전례에 따라 정3품 상계인 통정대부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인조는 두 번째 회맹제에 참여한 공신의 적장 자손에게도 첫 번째와 같은 수준의 상격을 시행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첫 번째 회맹제가 거행된 지 약 3년 만에 두 번째 회맹제가 거행되면서 짧은 기간 내에 동일한 이유로

109) 『승정원일기』 24책, 인조 7년(1629) 2월 7일 계사.
110) 『忠勳府謄錄』 4 「順治四年(1647)二月初七日」.
111) 장서각, 『楊州 思陵 海州鄭氏 宗家 古文書』 1,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8, 140면.

두 번의 상격을 행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웠다. 이에 결국 두 번째 회맹제에 참여한 공신의 적장 자손에게는 나견과 백금이 내려졌고 70세 이상인 자들에게만 가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 회맹제 이후 약 20년 만에 거행된 세 번째 회맹제는 다시 첫 번째 회맹제의 전례와 동일한 방식으로 공신의 적장 자손에 대한 가자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5.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고에서는 국가가 공신 자손을 대상으로 시행한 우대 정책의 실상을 고찰하기 위하여 국초부터 인조대까지 공신회맹제가 시행되는 과정, 인조대에 거행된 회맹제의 참여 인원, 회맹제 이후에 논의된 참여자의 상격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고에서 유독 인조대를 주목한 이유는 반정으로 인해 정치세력이 급격하게 교체되면서 불안정해진 정국을 다스리기 위해 공신의 녹훈과 회맹제의 시행이 빈번하였고, 또한 전란으로 인해 이전의 기록들이 소실되면서 회맹제의 시행 및 참여자들을 시상하는 규례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어 관련 논의가 많이 일어난 때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의 회맹제는 개국공신이 녹훈되었을 때부터 시행되었는데 초기에는 신공신만이 참여하는 회맹제와 공신 전체가 참여하는 회맹제가 구분되어 시행되었다. 그러다가 성종대에 좌명공신이 녹훈되면서 신공신과 구공신이 모두 참여하는 형태로 거행되었고, 이 이후로는 새로운 공신이 녹훈될 때만 회맹제가 행해지고 구공신이 이에 참여하는 형태로 줄곧 유지되었다. 다만 임진왜란 이후로는 서로 다른 공적을 가진 공신들의 녹훈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효율적인 일처리와 경비의 절감을 위해 한꺼번에 회맹제를 거행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인조대에 들어서는 총 다섯 번의 공신 녹훈이 있었다. 처음으로 정사공신이 녹훈되어 회맹제 준비가 이루어지던 사이에 진무공신이 녹훈되면서 두 공신의 회맹제가 함께 거행되었다. 그 후 소무공신이 녹훈되고 곧바로 영사공신이 녹훈되면서 이 경우도 두 공신의 회맹제가 동시에 거행되었고, 마지막

으로 영국공신이 녹훈되어 회맹제가 거행되었다. 이처럼 비슷한 시기에 녹훈된 공신의 회맹제를 병합하여 거행하였기 때문에 공신의 녹훈 횟수보다 회맹제의 거행 횟수가 적게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공신을 녹훈한 시점과 회맹제를 거행한 시점을 비교해보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6개월이 소요되었다. 회맹제를 준비하는 기간은 대략 5개월 정도에 불과했으나 국가재정의 부족, 추운 날씨, 풍정·사묘친제 및 세자책봉례와 같은 국가 제례와의 일정 중복, 과거시험과의 일정 중복, 청나라 사신의 행차 등과 같은 사유로 여러 차례 연기되면서 늦게 거행된 측면이 있다.

인조대의 회맹제에 참여한 인원은 대략 300여 명 정도의 규모였으며 회맹제가 거듭될수록 점차 감소하였다. 이는 신공신 녹훈 규모의 축소, 공신의 자격을 유지한 구공신의 숫자 감소, 변방 외직에 재직 중인 이들의 회맹제 참여 제한, 신병 또는 상중으로 인한 불참 등으로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들을 제외하고 회맹제에 참여한 이들을 혈연관계에 따라 분류하면 공신만 참여한 사례, 공신과 아들들이 함께 참여한 사례, 자손들만 참여한 사례로 구분된다. 이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녹훈 시점과 회맹제의 시점 간의 간격이 멀어질수록 공신의 직접 참여보다 자손들의 참여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신을 중심으로 행해지던 회맹제에 공신의 적장자와 친자가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사공신회맹제 때부터이고, 적장손들이 참여하게 된 것은 팔공신회맹제 때부터이다. 이는 회맹제가 신·구공신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바뀐 후, 구공신이 사망하게 되면서 구공신을 대신하여 이들의 자손들이 참여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전례가 되어 공신 자손의 회맹제 참여는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 같다.

회맹제 뒤에는 참여했던 이들에게 물품이나 가자를 내려주는 전례가 생겨났다. 처음에는 국왕의 일시적이고 특별한 명령에 의해서 상격이 주어졌으나 회맹제가 거듭될수록 전례가 계속되면서 결국 하나의 규례를 이루게 된 것이다. 이에 인조는 회맹제에 참여한 공신의 적장 자손들에게 가자를 내렸으며 이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만 물품을 하사하였다. 그러나 두 번째로 거행된 회

맹제의 경우에는 짧은 기간 두 번의 회맹제 개최로 상격이 중복된다는 대간의 입장과 대내외적으로 불안한 정치적 상황을 종식하기 위해 자신에게 우호적인 세력을 조성하려는 인조의 입장이 대립하였기 때문에, 상격이 일부 조정되면서 회맹제에 참여한 공신의 적장 자손에게는 주로 물품을 하사하고 70세 이상인 자들에게만 가자가 내려지게 되었다.

이처럼 공신의 자손에게는 조선 전기부터 회맹제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고 회맹제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도 특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국가가 공식적인 제도로 규정한 충의위 외에, 비정기적으로 행해진 국가 전례에서도 공신 자손을 지속적으로 우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 국가가 공신 자손을 우대하는 정책은 한 가지 방향에서만 진행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 이루어졌으며, 이것은 공신 자손들이 그들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유지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고에서 다룬 내용만으로는 국가가 취한 공신 자손의 우대 정책의 전모와 그 영향력을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관련 내용을 더욱 심화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寧國]錄勳都監儀軌』(奎14946), 규장각한국학연구원.
『[昭武寧社]錄勳都監儀軌』(奎14583),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大典通編』(http://db.history.go.kr/law).
『承政院日記』(http://sjw.history.go.kr).
『十九功臣會盟錄』(K2-627), 장서각.
『十七功臣會盟錄』(일산古2513-21), 국립중앙도서관.
『二十功臣會盟錄』(일산古2513-23), 국립중앙도서관.
『靖社振武兩功臣謄錄』(奎14581-2), 규장각한국학연구원.
『朝鮮王朝實錄』(http://sillok.history.go.kr).
『忠勳府謄錄』(奎15048의1-v.1-39),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고민정, 「조선전기 충훈부의 설립과 역할」, 『진단학보』 133, 진단학회, 2019.
_____, 「조선 후기 『충훈부등록』의 자료적 검토」, 『민족문화연구』 86,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20a.
_____, 「조선 후기 공신의 녹훈과 특권에 관한 연구」, 『역사문화연구』 75, 한국외국어대 역사문화연구소, 2020b.
고수연, 「鎭川地域士族의 分岐양상과 무신난」, 『역사와 실학』 68, 역사실학회, 2019.
김명화, 「朝鮮後期 忠勳府文書 硏究」,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9.
김학수, 「18세기 한 鄕班 출신 공신의 정치·사회적 존재 양상」, 『조선시대사학보』 77, 조선시대사학회, 2016.
박기훈, 「인조대 진무공신의 정치적 위상과 군사 활동」,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20.
신병주, 「1624년 이괄의 변의 경과와 성격」, 『고성이씨 가문의 인물과 활동』, 일지사, 2010.
이기순, 「「仁祖反正」 功臣勢力의 性格」, 『백산학보』 38, 백산학회, 1991.
이상식, 「숙종대 保社功臣의 錄勳 과정과 사회적 關係網 분석」, 『한국사연구』 155, 한국사연구회, 2011.
이준구, 『朝鮮後期 身分職役變動硏究』, 일조각, 1992.
장서각, 『楊州 思陵 海州鄭氏 宗家 古文書』 1,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8.
정긍식, 「朝鮮前期 功臣地位의 承繼」, 『서울대학교 法學』 43-2, 서울대 법학연구소, 2002.
한명기, 「17세기 初 仁祖反正과 朝明關係」, 『제26회 동양학 학술회의록』,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1996.

【Abstract】

The Hold of Meritorious Subjects' Pledge Rituals and the Discussion of the Participants' Awards in the Reign of Injo of Joseon —Focusing on an Affirmative Action for Descendants of Meritorious Subjects—

Ko, Min-Jung*

This thesis was written to study an affirmative action for descendants of meritorious subjects in the Joseon Dynasty. Meritorious subjects are the class that received special treatment from the country in recognition of their achievement for it. By the way, the country's affirmative action for meritorious subjects included their descendants because the pre-modern era had characteristics of the caste system. Therefore, the study tries to check the affirmative action for descendants of national meritorious subjects concretely by examining benefits given to eldest legitimate sons and grandsons of meritorious subjects' regular wives after conducting their pledge rituals.

There were 5 investitures of meritorious subjects in the reign of Injo of Joseon and accordingly, meritorious subjects' pledge rituals were held three times. First, 17 meritorious subjects' pledge ritual was held in 1625 as meritorious subjects of state affairs and Jinmu were invested. Second, 19 meritorious subjects' pledge ritual was held in 1625 as meritorious subjects of Somu and Yeongguk were invested. Third, 20 meritorious subjects' pledge ritual was held in 1646 as meritorious subjects of Yeongguk were invested.

Meritorious subjects and their sons could participate in these pledge rituals. And after the death of the meritorious subjects, their eldest sons of the legitimate wives or the eldest legitimate sons and grandsons of their regular wives acquired qualification of participating in them. And the people who participate in meritorious subjects' pledge rituals could get particular items or have benefits of Gaja just because of doing it. Injo of Joseon was held in check by surveillance and censorial officials because he

* Lecturer, Dept. of History, Kangwon National Univ.

preferred Gaja to giving items, but generally, he raised Jageup for the people who had no official rank, were Junjik as Jagung, or were more than 70 years old in the name of Nojik.

Like this, descendants of meritorious subjects are thought to be able to be privileged for generations due to their ancestors' virtue and conduct because they belonged to the structure to continue to get Pumgye as meritorious subjects' pledge rituals were repeated.

Keywords: Descendants of meritorious subjects, Meritorious subjects' pledge rituals, Record of meritorious subjects' pledge rituals, Gaja, Heredity of privilege.

접수일: 2021.06.30. || 심사일: 2021.07.08. || 게재확정일: 2021.08.13.